##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682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김선교·박수민·구자근

서지영 · 김성원 · 윤상현

서천호 · 김예지 · 박준태

박정훈 · 김소희 의원

(119]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재해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가 연이어 발생하는 등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부터 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고, 폭염 등 이상기후가 건설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이상기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폭염·한파 등 악천후를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려는 것 임(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폭염·폭우·폭설·태풍·한파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제70조제1항제1호 중 "태풍·홍수 등"을 "태풍·홍수·폭염·한파 등" 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	
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u>7. 폭염·폭우·폭설·태풍·한</u>
	파 등 기상 여건에 의해 영향
	을 받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
	<u>해</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	
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	
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	
장하여야 한다.	
1. <u>태풍・홍수 등</u> 악천후, 전쟁	1. <u>태풍·홍수·폭염·한파 등</u> -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